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81

발의연월일: 2021. 4. 9.

발 의 자: 강득구·어기구·양원영

이소영 · 김정호 · 박완주

홍성국 · 김승원 · 윤준병

강민정 · 김성환 · 박 정

민형배 · 유정주 · 송재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함.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포 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제10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른 장례식 장 중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제로웨이스트샵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제품(폐기물을 유발하는 용기 또는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시설(이하 이조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제로웨이스트샵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	
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	
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	l
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	
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	
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	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
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	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식품접객업	른 식품접객업(식품접객업에
	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1회용 수저를 무상으로 제공
	하지 않는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
	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세척시설을 갖춘
	<u>장례식장</u>
<u>6</u> . (생 략)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 <삭 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 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생략)
- ③ (생략)

<신 설>

- 4.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 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 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 는 사업
 -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 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3조의4(제로웨이스트샵 설치

<신 설>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로웨이스트(zero-w aste) 제품(폐기물을 유발하는 용기 또는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②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시설, 인력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 제로웨이스트샵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